

# 청원경찰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
## 1. 개정이유

- 2017년 임금협약서 합의사항 반영

## 2. 주요골자

- 임금협약서 합의사항 : 『양 공사 통합관련 처우개선으로 정액 22만원을 보전수당(업무지원수당, 방호수당)에 반영하여 2017.10월부터 적용하고 향후 통합보수체계에 기본급화 추진』

## 3. 참고사항

가. 개정근거 : 2017년 임금협약서

나. 질 차 : 부패영향평가 → 사유심의 → 사장결재 → 개정·시행

붙임 1. 청원경찰운영규정 개정(안)

2. 청원경찰운영규정 개정(안) 신규대비표. 끝.

붙임#1

## 청원경찰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
청원경찰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 ('17. . 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청원경찰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[별표3]

제수당지급기준 (제18조 관련)

수 당 별	지급율 및 지급액	비 고
1. 장기근속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
2. 연차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
3. 상여수당	◦ 정급 상여금 지급율(200%) ◦ 성과급 상여금은 일반직원과 동일	
4. 가족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
5. 법정수당	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한 청경에게 지급(지급율은 일반직원과 동일)	
6. 감독자직책수당	조장 3.5만원, 반장 4.5만원, 대장 8.5만원	
7. 직무수당	월 15,000원	
8. 방호수당	◦ 통상근무자 : 통상임금 × 6.49%+22만원 ◦ 교대근무자 : 통상임금 × 6.22%+22만원	

현행			개정(안)			비고
<신설>			부 칙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			
[별표 3] 제수당지급기준(제18조 관련)			[별표 3] 제수당지급기준(제18조 관련)			
수 당 별	지급율 및 지급액	비 고	수 당 별	지급율 및 지급액	비 고	
1. 장기근속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	1. 장기근속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	
2. 연차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	2. 연차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	
3. 상여수당	◦ 정급 상여금 지급율(200%) ◦ 성과급 상여금은 일반직원과 동일		3. 상여수당	◦ 정급 상여금 지급율(200%) ◦ 성과급 상여금은 일반직원과 동일		
4. 가족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	4. 가족수당	일반직원과 동일		
5. 법정수당	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한 청경에게 지급(지급율은 일반직원과 동일)		5. 법정수당	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한 청경에게 지급(지급율은 일반직원과 동일)		
6. 감독자직책수당	조장 3.5만원, 반장 4.5만원, 대장 8.5만원		6. 감독자직책수당	조장 3.5만원, 반장 4.5만원, 대장 8.5만원		
7. 직무수당	월 15,000원		7. 직무수당	월 15,000원		
8. 방호수당	◦ 통상근무자 : 통상임금 × 6.49% ◦ 교대근무자 : 통상임금 × 6.22%		8. 방호수당	◦ 통상근무자 : 통상임금 × 6.49%+22만원 ◦ 교대근무자 : 통상임금 × 6.22%+22만원		